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년 5월 30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전 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도시의 지하 공간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-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~제1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5년 6월 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4
 - 전자메일 : jw3788@korea.kr

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오산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오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

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(변경을 포함한다) · 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해제 · 고시에 관한 사항
3.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오산시 소속 공무원
2.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·환경·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
3.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

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,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오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